2007년 하반기부터
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

○ 2007. 6월 현재 관계법령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음.

산 림 청

"건강한 숲, 풍요로운 산, 행복한 국민"

목 차

1. 보전산지내 행위제한 완화 2

2.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도 개선 2

3.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2

4. 산지전용지 중간복구제도 도입 3

5. 수목원 조성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도입 3

6.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3

7.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업무 위임 확대 4

제 목	종 전	달 라 지 는 내 용	관련규정 및 시행일	변경사유 및 효과	담당부서
1. 보전산지내 행위 제한 완화	< 신 설 > < 신 설> ○ 수산자원 보호구역내 행위 제한은 산지관리법 적용 < 신 설 >	○ 임업용산지 내에서 산촌개발사업, 수목장림 조성 가능 ○ 공익용산지중 사찰림 내에서 사찰 신축 가능 ○ 수산자원보호구역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적용 ○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광해방지시설 설치 가능	○ 산지관리법 제12조 (2007. 7. 27) 〃 〃 ○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 (2007. 7월 예정)	○ 산촌개발 및 수목장림 활성화 ○ 늘어나는 수요충족 및 민원해소 ○ 수산자원 보호구역 주민 민원해소 ○ 광해방지시설을 허용하여 훼손산림 복구	산지정책팀 ☎ (042) 481-4142
2.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제도 개선	< 신 설 > < 신 설 >	○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사유에 재해방지 시설 및 산촌개발사업 추가 ○ 산지전용기간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	○ 산지관리법 제19조 (2007. 7. 27) 〃	○ 산촌사업시 자부담 경감 ○ 민원해소	산지정책팀 ☎ (042) 481-4142
3.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제도 도입	< 신 설 >	○ 불법 산지전용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-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위반 50만원 - 산지전용신고 위반 30만원	○ 산지관리법 제46조의2 (2007. 7. 27)	○ 불법산지전용 사전예방	산지정책팀 ☎ (042) 481-4142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규정 및 시행일	변경사유 및 효과	담당부서
4. 산지전용지 중간 복구제도 도입	< 신 설 >	○장기간에 걸쳐 산지전용이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전에 중간복구명령을 할 수 있고, 복구 완료된 면적은 복구예치비를 반환	○산지관리법 제39조 (2007. 7. 27)	○훼손된 산지를 조기에 복구하고 복구비 예치 부담 경감	산지복구팀 ☎ (042) 481-4226
5. 수목원조성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 도입	< 신 설 >	○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고 할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,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검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	○수목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(2007. 7. 4)	○사업의 부실·지연 등을 방지	산림환경보호팀 ☎ (042) 481-4241
6.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	< 신 설 >	○일정요건을 갖추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의 개설·운영이 가능	○수목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(2007. 7. 4)	○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의 수준 향상	산림환경보호팀 ☎ (042) 481-4241

제 목	종 전	달 라 지 는 내 용	관련규정 및 시행일	변경사유 및 효과	담당부서
7.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업무 위임 확대	○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사유토지 매수청구업무를 지방산림청장이 수행	○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사유토지 매수청구업무를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수행하도록 위임	○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(2007. 9월 예정)	○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	백두대간 보 전 팀 ☎ (042) 481-4295
	○ 백두대간 보전 등을 위해 벌채를 유보하는 데 따른 소득감소분 지원금 지급업무를 산림청장이 직접 수행	○ 백두대간 보전 등을 위해 벌채를 유보하는 데 따른 소득감소분 지원금 지급업무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	〃	〃	



httP://www.forest.go.kr